▶ www.naqs.go.kr
▶ www.foodbiz.or.kr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자료집

2018.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ONTENTS

- 유기가공식품 인증 관련 ····· 03
- 유기식품 등의 표시 ····· 08
- 동등성 인정관련 ····· 14

- 붙임1)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현황 ··· 19
- 붙임2) 인증신청서 서식 ····· 20

Q&A

이 자료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추후 관련 규정 개정 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토일 : 2018.12.10.)

유기가공식품 인증 관련

01

유기가공식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나요?

- **유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된장, '유기농 채소'로 제조한 녹즙, '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발효유와 같은 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02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사용 가능한 원료는 무엇인가요?

-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유기가공식품
  - ②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다만,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비유기 원료와 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허용물질(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을 제품 중량의 5% 비율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의미는?

-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4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우선 인증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농관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신청서류 :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

- 인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50일이며, 인증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붙임 1]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 현황 [붙임 2] 인증신청서 서식

05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는?

- 유기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유기식품 인증),
제20조(인증 신청 및 심사),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제23조의2(수입유기식품등의 신고),
제24조(인증 취소),
제25조(동등성 인정),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허용물질의 종류(별표 1),
유기표시기준(별표 5),
인증정보 표시방법(별표 6),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별표 7),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별표 8) 등

- 그리고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근거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6

유기농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경우 소관부처는?

- 유기 농·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리고 유기 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도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유기 농산물과 유기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가공식품은 유기 원료의 함량 비율이 더 큰 품목을 관할하는 부처가 소관부처가 됩니다.

  ※ 유기 농·축산물의 비율이 유기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부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합니다.

07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서 '경영관련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입출고 내역, 제조·가공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역, 제품 출하처별 판매 내역 등이 있으며, 경영관련 자료는 1년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수 기록사항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 · 가공식품의 입고 · 사용 ·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 · 사용량 · 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 · 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 · 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08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입한 인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기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유기 표시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기식품 등의 표시

01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방법과 인증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표시도형 또는 표시문자)와 인증사업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유기가공식품 표시 예시 >

① 업체명 : ** 식품
② 전화번호 : 054-429-1234
③ 제조업체 주소 : 김천시 율곡로 141
④ 인증번호 : *-*-**
⑤ 인증기관명 : ** 인증원
⑥ 생산지 : 국내산

참고

1.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2. 생산지는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 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정보(인증 유효기간, 인증품목 등)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nviagro.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①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

  ⇒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

  ②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경우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 가능

  ※ 위 ①, ②에 따른 표시 제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 원료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함

-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②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한하며, 인증로고나 제품명으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
주표시면 또는 제품명에 로고 및 "유기" 용어 사용 안돼요!

"유기 ○○" 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 등의
"유기" 용어 사용은 **절대 금지! 로고사용**도 당연히 **NO!**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유기농원료를 70% 이상 사용한 경우,
정보표시면에 '유기' 용어 사용은 가능해요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유기농원료를 70% 미만 사용한 경우,
정보표시면에 '유기' 용어 사용 안돼요!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만 가능해요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 유기표시 기준 >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 (제한적 유기표시 제품)	
	유기농함량 95% 이상	유기농함량 70%이상	유기농함량 70%미만 (특정원료)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O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O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X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O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O	O	O

03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국에서 포장 겉면에 인쇄한 'organic' 영문 내용도 친환경농어업법의 규제사항에 해당되나요?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organic" 표시가 가능하나,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가공식품에는 "organic" 등 '유기'를 의미하는 외국어 표시는 금지됩니다.

04

유기콩을 원재료로 사용한 두부의 경우, '유기농 두부', '유기 두부'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경우 '유기농 두부' 또는 '유기 두부' 모두 표시 가능하며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05

유기농 사과주스의 라벨 정면에 'ORGANIC APPLE 100%'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적정한지요?

- '100%'라는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100% 유기농 사과만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에는 위 표기 가능합니다.

06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우리나라 인증로고와 수출국 인증로고를 같이 표시 할수 있는지요?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수출국가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각각의 인증로고를 함께 표시 할 수 있습니다.

07

국내에서 취급자 인증을 받은 소분업체에서 유기설탕을 수입하여 소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인증기관이 변경되어서 표시사항에 새로운 인증기관 변경사항을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가 가능한지요?

- 종전의 표시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지우거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판매 할 수 있습니다.

08

유기가공식품을 동등성 인정 체결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판매할 경우, 유기 표시가 가능한지?

- 유기식품을 소분(小分)하여 유기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수입 제품을 소분(小分)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인증로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등성 인정 관련

01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요?

-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수입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EU와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함 (2018년 12월 기준), 동등성 인정받은 국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정보 시스템(www.enviagro.go.kr) '동등성인정' 메뉴에서 조회 가능

02

한국이 미국, EU와 체결한 상호 동등성 인정의 의미는?

- **한국 또는 미국·EU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최종 제조·가공되어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한국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미국과 EU에 '유기(Organic)' 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습니다.**

※ 미국「국가유기프로그램(NOP)」, 또는 EU「(EC) No 834/2007」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서 '유기(Organic)' 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03

한·미/EU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의 범위는?

-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정의(식품공전 1.2.29)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임· 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 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포장한 식품 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 또는 EU에서 최종 제조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되며, 수출국 규정에 따라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등성 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4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 또는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유기로 표시될 수 없습니다.
- 미국 또는 EU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 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상대국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05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미국 또는 EU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 미국 또는 EU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 한국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 검사 및 후속조치사항은 한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06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 국가의 유기농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국가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국에 수출한 인증품의 유기표시 방법은 수입국의 유기표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인증 로고 >

07

EU인증을 받은 칠레산 와인 (Organic 표기)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 EU인증을 받았더라도 EU 회원국에서 최종 제조·가공되지 않은 칠레산 와인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08

향신료 원료의 원산지가 인도이며, 이탈리아에서 최종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동등성 인정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수출국가의 유기 규정에 부합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원산지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 제품은 동등성 인정대상에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한 유기가공식품도 미국 또는 EU에 수출 가능합니다.

09

EU의 유기가공식품을 동등성 인정으로 수입할 때 미국 USDA의 로고가 함께 있는데 EU로고와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 EU에 소재한 해당 사업장이 USDA 인증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USDA 로고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마다 유기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의 차이가 있는데 상대국의 허용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도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한지요?

- 식품제조 여건 등의 차이로 국가 간 일부 허용물질의 차이는 존재하며 검증과정에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과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 일부 차이는 상호 인정 됩니다.

  따라서, 별도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 자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에 수출 가능합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현황 총 27개소 ('18.12.11. 기준)

번호	인증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한국농식품인증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7	(043)212-0934
2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051	(033)732-4234
3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 136길 30	(053)326-9895
4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031)670-5625
5	오씨케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26	(02)522-4351
6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062)530-2034
7	(사)농산물품질평가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7(화서동) 7층 2-1호	(031)298-6615
8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02)450-4200
9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061)750-5471
10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5	(031)429-9814
11	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 1길 2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063)856-0907
12	네오친환경인증센타(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영통동, 영통 디지털엠파이어 F동 1309호)	(031)205-0199
13	건국에코써트인증원㈜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1599-6259
14	㈜녹색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56-3(가곡동)	(055)356-6279
15	㈜우리농인증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055)941-0828
16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908호	(02)2281-9237
17	ACO	18 Eton St Nundah Queensland 4012 Australia	(+61)7 3350-5706
18	Kiwa BCS Öko-Garantie GmbH	Marientorgraben 3-5 90402 Nurnberg, Germany	(본사)49 91142439-0 (한국)(041)562-6265
19	㈜비씨에스코리아	충남 천안시 월봉11길 20	(041)562-6265
20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천봉서로 755	(054)534-7060
21	(사)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제주특별자치시도 제주시 남광로 187 B 132	(064)752-6050
22	(재)하동녹차연구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4	(055)880-2888
23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연구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36-11, 202호	(043)731-2915
24	㈜에코리더스인증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	(02)393-3922
25	(사)친환경축산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35	(02)401-6888
26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061)339-1211
27	한국작물연구소(주)	전남 담양군 봉산면 송강정로 88-1	(061)381-3643

인증신청서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신청서(제조 · 가공 또는 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가공자: [ ] 유기가공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 양축용 유기사료, [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유기원료 95%이상), [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유기원료 70%이상)]]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자, [ ] 운송자, [ ] 수입자, [ ] 판매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